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입법동향 – 2024 - 제6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 1
2.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조례」 ····· 5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 10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13
2.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 ····· 48
2.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 56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64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1. 대학생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급에 조례 규정 가능여부 ····· 70
2. 지방보조금 교부 시 정치적 중립 조건 부여 가능여부 ····· 73

Ⅵ. 법령 해석 사례

1.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 ····· 79
2. 광고탑 설치 시 공작물 축조 신고 여부 ····· 86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6. 13., 전라남도조례 제6025호, 2024. 6. 13., 제정】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제정이유

◇ 전라남도 **청년인구 유출 속도**와 **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전라남도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청년특화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청년특화구역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제6조).

다. 청년특화구역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제5~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곳(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우리도의 최근 **1년간**(2023.2.~2024.2.) **주민등록인구수**는 **1,766,524명→1,751,318명**으로 **15,206명**이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내 **청년층(18세~39세) 인구**는 **405,527명→392,460명**으로 **13,067명**이 **줄어들어 청년층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우리도의 경우 **청년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지원, 농업인 육성 지원 등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바,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6. 13., 전라남도조례 제6025호, 2024. 6.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를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문화·창업 활성화, 고용 확대,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 및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
3. 청년특화구역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유입·유출, 청년 경제활동, 청년마을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청년특화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 농촌**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재지정·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지원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청년 창업·문화·주거 공간 조성
3. 법률·금융·경영 상담
4. 일자리·창업 컨설팅 및 직업 교육 훈련
5. 국내외 교류·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년특화구역 재지정 등)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지정 기준의 준수
2. 제11조에 따른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결과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청년특화구역 운영 보고**) **시장·군수**는 **청년특화구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보고결과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 운영**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12조(용역)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년특화구역의 지정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4. 5. 31., 광주광역시조례 제6387호, 2024. 5. 31., 제정】

□ 소관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사사용 등에 대해 규정함(제9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8곳(강원, 경기,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국가통계포털(KOSIS)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내 등록장애인**은 총 **130,189명**이며 이 중 **시각장애인**은 **총 10,84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2%**에 해당함.

○ **시각장애인**은 한글을 대신하여 **점자**를 **제1문자**로 **사용**하고 있으나,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정보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광주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4. 5. 31.] [광주광역시조례 제6387호, 2024. 5. 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출연·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 지원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 지원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발전 지원의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교정사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24. 5. 23., 경상북도조례 제5062호, 2024. 5. 23., 제정】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정이유

◇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여건을 마련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14곳(서울,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 전체의 교과별 평균 성적**이 **초등학교 100분의 50, 중학교 100분의 40, 고등학교 100분의 30**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는 총 2,783명**(초 834명, 중 852명, 고 1,097명)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는 **총 247명**임(초 40명, 중 171명, 고 36명).

○ 또한, 같은 규칙 제6조의2에서는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유능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시행 2024. 5. 23., 경상북도조례 제5062호, 2024. 5.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학습 지원방안
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
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4호, 2024. 6.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또는 **이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이전** 등에 **드는 비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조제2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책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신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 관련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도는 인구감소지역에 **5대 전략*** **76개 사업**에 **1,404억원**을 **투입**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유출인구 등을 최소화하여 **정주인구 유지**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5대 전략】**

- **전략1 : 결혼·출산지원**(16,342백만원)
- **전략2 : 촘촘한 돌봄확대**(29,696백만원)
- **전략3 : 특성화 교육 제공**(10,673백만원)
- **전략4 :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46,069백만원)
- **전략5 : 삶의질 및 지역활력 제고**(37,589백만원)

○ 개정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이전**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도의 5대 전략 중 **전략5**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바,**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인 「전북특별 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인구 및 지방소멸 대응 등의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하며, 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효과적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주관부서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 시·군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인구 및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2. 인구현황에 대한 다양한 자료 조사·수집·분석 등
3. 그 밖에 관련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에 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연계와 활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지방소멸 정책·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전북자치도 소속 실·국장급 중에서 인구정책, 국가예산 관련 공무원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전북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결과를 종합적인 지원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1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우수사례 발굴·확산)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관계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발굴·포상·홍보
2. 인구감소지역 대응 우수사례 확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

③ 도지사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운영·관리)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관련한 정책·사업 및 행정·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운영·관리 위하여 총괄·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총괄·지원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20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내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규제 완화(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나.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관리 체계 마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다.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시기 등 규정(제36조 등)
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관리 강화(별표 2 제2호나목)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해당조례:「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특정지역으로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등이 해당됨.

○ **시행령 개정안**은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지만

○ **현행** 우리도 **조례**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는 바,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 이하
2. 제1호에 따른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업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업소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판은 총수량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2.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 0.2미터 이내인 돌출간판 1개
3. 제10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가 표시하는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가스충전소·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하여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간판

제3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①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의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영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고물 등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영 제25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빛의 밝기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 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옥상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에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해야 한다.
4. 간판의 높이는 8미터 이내로 하되,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6호나목3)·다목, 같은 조 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

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4.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내, 높이 1.5미터 이내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1면의 면적은 3개 이하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내로, 4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빛이 점멸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2. 벤치
3. 공공자전거보관대
4. 지상변압기함
5. 버스정보안내기
6. 공중전화부스 및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4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 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나.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다.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라.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마. 물가 안정 등 국가, 전북자치도 또는 시·군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바. 영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정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내인 간판을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의 규격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제9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할 수 있다.

2.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세로크기는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돌출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그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벽면의 전면 가로폭이 10미터 이내인 건물에는 1줄로, 10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는 10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5.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6.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내이고, 두께 0.2미터 이내인 간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2.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5.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내, 세로 70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판은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③ 태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간판을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5.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그 벽면 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 크기는 그 벽면의 폭(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정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의 가로크기는 10미터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3.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5.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6.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선정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수막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를 말한다)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다.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해당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 크기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2)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⑤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4.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표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등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그 건물 옥상에도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적용받지 아니 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6. 시장·군수는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내여야 하고, 크기 7미터와 폭 120센티미터 이내의 광고물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애드벌룬의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 이상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영 제15조제1호 각 목과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4.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그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6.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7.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6조 및 이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한다.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전단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아니 된다.

2. 가로크기는 3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16조(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아치광고물은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부분까지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유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하여야 한다.

5.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다.

2. 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2층이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1층)에,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은 건물의 3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5.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 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도지사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9조(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등) ① 도지사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벽면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한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
2. 광고물등의 종류
3.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4.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군수가 제한사항의 변경 및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안전표시등
2.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3. 지하도 등의 공기조절장치
4. 교통안전시설물
5. 낙석방지시설물
6.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표시방법의 강화)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③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좋은 간판을 설치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매년 아름다운 간판상을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도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소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도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영 및 이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북자치도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25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 이용 간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크기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26조(광고물 실명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에서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표시하는 경우

③ 실명제 표시는 별지 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 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실명제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消印)이 찍히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전북자치도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은 전북자치도 금고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통합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7조 및 이 조례 제28조에 따른 수수료
8.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9.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프랑스의 빈집세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9호, 통권 제247호, 강명원】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총 132,052호**이다. 지역별 빈집 현황은 **도시지역**이 **42,356호**(32%)이며, **농촌지역 66,024호**(50%), **어촌지역 23,672호**(18%)이다. 이러한 빈집은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생상 문제, 범죄 장소로 사용될 우려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빈집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인 **「농어촌정비법(1995년)」**과 국토교통부 소관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년)」**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프랑스**는 **빈집**에 대하여 **국세**인 **연간세금(TLV)**과 **지방세**인 **빈집 거주세(THLV)**를 「조세법전」에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특히 **TLV는 주택 공급** 및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에 **부과**된다. 이러한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 빈집 관리제도 관련 입법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주 제 어: 빈집, 빈집관리, 빈집 연간세금(TLV), 빈집 거주세(THLV)

□ 도입

❍ 우리나라의 빈집은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구 등이 3,000호 미만으로 다른 지역보다 빈집 수가 적은 편이다. 특히 신도시인 세종시의 빈집은 647호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림 1 전국 시도별 빈집현황



*출처 : 2023.6.8. 관계부처합동(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도자료(총 132,052호)

❍ **우리나라**는 **도시의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빈집 철거 등의 규정이 포함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 등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또한, **농어촌 지역의 빈집관리**를 위해 2000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빈집정비·철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농어촌정비법」 내 제64조와 제64조의 2를 신설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빈집 증·개축, 빈집 용도변경, 빈집 매입 및 활용, 빈집 철거, 빈집 철거 후 공동이용시설(주차장 등)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한편, 2021년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2024년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장의 빈집관리 조치명령 불이행 시 빈집 소유자에게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농어촌 지역 빈집 대상 이행강제금은 24. 7. 3. 시행 예정)하였다.

❍ **반면 프랑스는** 빈집관리를 위해 「조세법전(Code général des impôts)」 내에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TLV)과 **빈집 거주세**(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 THLV)를 **규정**하여 **부과**하고 있다.

표 1 빈집관리 법률 및 주요 내용

구분		한국		프랑스	
빈집현황 (2023년 발표)		132,052호 (전체 주택 대비 약 0.6%)		약 1,200,000호[6] (전체 주택 대비 약 3.4%)	
빈집현황 조사		한국부동산원[7] (국토교통부 산하) - 1차 조사 : 2018년~2022년		위험·환경·교통·개발 전문 연구센터 (환경 및 국토부 산하)	
관련 법률 (제정연도)		소규모 주택정비법 (2018년)	농어촌정비법 (1995년)	조세법전(1950년)	
		도시지역 적용	농어촌 지역 적용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환경 및 국토부	
관련 규정 (도입연도)		빈집 철거 등 (2018년) 이행강제금 (2021년)	빈집 철거 등 (2020년) 이행강제금 (2024년)	TLV (1998년) THLV (2006년)	
규정 내용	집행 수단	철거 등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이내)		조세 부과	
				TLV(연 1회)	THLV(매 2년)
	부과 기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비어 있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없이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비어 있고, 최소한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택
	이행 강제 금액	빈집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 (철거 미시행 시: 40%, 안전조치 미시행 시: 20%)	500만원 이하 (2024.7.3. 시행 예정)	첫해: 빈집 임대료 x 17%(세율) 이후: 빈집 임대료 x 34%(세율)	빈집 임대료 x 18%(평균세율)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부과 및 징수기관	시청, 군청, 구청		국립주택청	시청

*출처 : 관련 법률 및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함

□ 프랑스의 빈집 조사 · 관리 정책

❍ 프랑스에서 빈집관리 총괄부처는 환경 및 국토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이다. 빈집 조사는 산하 조직인 주택 및 환경정비국(DGALN)이 '위험·환경·교통·개발 전문 연구센터(Cerema)' 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연구센터는 조사 후 빈집데이터를 공공데이터 시스템(Datafoncier)에 게시하고 있다.

❍ 프랑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서는 인구수가 적을수록 빈집 수가 많다.

그림 2 프랑스 도시 규모별 빈집의 평균 비율



*출처 : Rapport du Les déterminants de la vacance longue durée des logements(2023)

❍ **프랑스**의 대표적 **빈집관리 정책**에는 **빈집세(연간세금과 거주세)** 부과 정책과 **'빈집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정책이 있다. 국가계획에는 빈집 확인·분류, 추적관찰 시스템 구축, 빈집의 재활용 및 매입 후 공원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프랑스의 빈집관리 정책

	국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정책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TLV(연간세금)	THLV(거주세)
도입	2020년	1998년	2006년
주체	중앙정부(환경부)		지방자치단체(시)
근거 법률 또는 정책	2020년 빈집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조세법전」 제232조 이하	「조세법전」 제1407bis조 이하
재원 및 조세 사용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으로 충당	빈집 해소를 위한 국가계획 지원	주택부족 해소 및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 지원
2023년 부과 금액	-	9,386만 유로	2,470만 유로

*출처 : 관련 법률 및 관련 정부 부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프랑스의 빈집세

1. 빈집세 부과

(1)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

❍ **요건 1**(연간세금 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 중 어느 하나와 **요건 2**(빈집 존속기간)가 **모두 충족되면 부과된다.**

요건 1) 연간세금 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시) 내 빈집

① **높은 임대료, 오래된 주택**의 **높은 매매가**를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 주민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에 대해 부과된다(조세법전 제232조제1항제1호, 제2호).

② **사회주택 단지**(Parc locatif social)의 **연간 퇴거자 수보다 입주 대기자 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 주민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5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에 대해 부과된다(조세법전 제232조제1항제1호).

③ **총주택 수에서 주거용 주택보다 비주거용 주택**(Logements non résidentiels)의 **비율**이 **높은 이유**로 **주택 공급과 수요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겨 주민이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5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에 대해 부과된다(조세법전 제232조제1항제2호).

요건 2) 빈집 존속기간

- 연간세금은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가구가 비치되지 않은 **빈집**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러한 빈집이 **여러채인 경우 각각**에 대해 **부과**된다(조세법전 제232조제2항).

❍ **연간세금 납세의무자 및 세금 액수**

- 연간세금은 요건 1 중 어느 하나와 요건 2를 충족하는 **빈집의 소유자, 용익권자**(Usufruitier), **건축이나 개축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1-2년 내)** 또는 **장기 임차인**이 **납부**한다(조세법전 제232조제3항).

-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의 **과세표준**은 매년 재평가되는 해당 **빈집**의 **임대료**로 **산정**된다. **세율**은 첫 번째 과세연도에 17%, 두 번째 과세연도부터 34%가 계속 적용된다.

❍ **부과 및 징수기관**

-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은 **국립주택청**(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에서 **부과 및 징수**하고 있다(조세법전 제232조 제4항).

-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 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시)는 **2023년 기준 2,200개**로 금액은 총 9,386만 유로(한화 약 1,385억)였다. **2024년**에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시)가 **3,690개**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연간세금**(TLV)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

❍ **요건 1**(거주세 부과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과 **요건 2**(빈집 존속기간)가 **모두 충족되면 부과된다.**

요건 1) 거주세 부과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시) 내 빈집

-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 **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 외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편의시설(가구, 전기설비, 수도설비 등)을 갖춘 주거용 빈집이 대상이 된다(조세법전 제1407bis조 제1항).

요건 2) 빈집 존속기간

- 거주세는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으로 **비어 있는 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부과된다(조세법전 제1407bis조 제1항).

❍ **거주세 납세의무자 및 세금 액수**

- **거주세**는 **요건1과 요건 2**를 **모두 충족**하는 **빈집 소유자** 또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용익권자** 등이 납부한다. **과세표준**은 주택, 차고, 정원, 별채 등의 **임대 가치**를 **모두 더한 임대료**로 **산정**된다.

- **빈집에 대한 거주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상이한데 평균은 **약 18%**이다. **2023년 기준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는 **2,470만 유로**(한화 약 364억)였다.
 이러한 거주세는 **시청에서 부과** 및 **징수**한다.

2. 빈집세 면제

❍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TLV) 면제

-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소 1년 이내**에, 최소 9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와 불가항력 상황(천재지변 등) 등으로 빈집이 된 경우에는 면제된다.

❍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 면제

- 과세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9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경우와 불가항력 상황(천재지변 등)으로 빈집이 된 경우, 비위생적인 이유로 철거 대기 중인 경우, 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공사는 주택 가치의 25%를 초과해야 함)에는 거주세(THLV)가 면제된다.

□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소규모주택정비법」등을 제정**하여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빈집 매입 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 시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며, 빈집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거나 매입 후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특정 빈집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반면, **프랑스는 요건에 부합하는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조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프랑스 중앙정부**는 높은 임대료 등이 원인이 되어 **주택 공급과 수요가 현저히 불균형한 지방자치단체 내 빈집**을 대상으로 **연간세금(TLV)을 부과**한다.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빈집에 대한 **거주세(THLV)를 부과**하고 있다.

❍ 한편, **프랑스**는 **빈집**에 대한 **연간세금(국세)**을 국가가 시행 중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빈집에 대한 **거주세(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의 **주택부족 해소 정책, 도시재생 프로그램** 등의 **재원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 프랑스 빈집세 입법례는 차후 우리나라 빈집 관련 법률 개정 시 참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환경 및 주거문화 등과 다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부담 수준도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미국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장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6호, 통권 제244호, 최서지】

◇ 2023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정부 차원의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사근로자**의 **공급**을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자(일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자(특례 고용허가제)이다. **가사서비스**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로 제한된다.

◇ **미국**에서도 가사근로자 보호에 **일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을 포함한 가사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국내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주제어: 외국인근로자, 가사근로자, 최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일반 고용허가제, 특례 고용허가제

□ 도입

❍ **역사적**으로 **미국**의 **가사근로자**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이주한 **저렴한 인건비**의 **외국인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4년 3월 미국 노동부 여성국에서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자 중 외국인**은 **17%**에 **불과**하지만, **가사근로자 중 외국인은 44%**에 달한다. 그 중 **가사도우미**와 **아이돌봄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각각 68%, 29%**에 달한다.

그림 1 미국 근로자의 외국인 비율 U.S. Department of Labor Fact Sheet p.2 (2024.3)



❍ 특별한 기술 없이 노동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가사근로자**는 **낮은 임금**과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구 노령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국적에 상관없이 **가사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현재 11개 주, 2개 대도시** 및 **워싱턴 D.C.**에서 **가사근로자**의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 **「가사근로자 권리 장전(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노동법전**에 **편제**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 연방법률

❍ 미국에서 **가사근로자 고용**은 **가정**의 **사생활 영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1938년 연방 노동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제정 당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가 **배제**되었다. 또한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였으나, **이 법**은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제외**되었다.

❍ **1974년 「공정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은 **보장**되었지만, **노인**을 **간병**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는 **여전히 제외**되었다

- **가사근로자**는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고용하는 **직접고용과** 인력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나뉜다. **직접 고용관계**의 가사근로자는 **최저임금 기준만 적용**받고, **간접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적용**받는다.
- 가사근로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일반 **가사업무**와 **돌봄업무**로 **구분**한다. 돌봄업무에 포함되는 **한시적 아이돌봄** 또는 **간병서비스**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입주 가사근로자** 역시 **초과근무 수당**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표 1 가사근로자의 고용 형태 및 제공서비스별 공정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고용 형태		제공서비스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가사업무	돌봄업무
최저 임금	적용 (가사업무에 대한 급여[11]가 제공되는 자로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적용	적용 제외 (한시적 아이돌봄 또는 고령 및 부상, 장애를 이유로 한 간병 서비스 (Companionship Services)[12])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제외	적용	입주가사 제외[13]	

❍ **2013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을 개정**하여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보호 규정**을 **추가**하였다.

- 국무장관은 취업 또는 교육을 위해 비이민(nonmigrant)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의 이직, 연방 이민·노동·고용법에 따른 법적 권리, 노동력 착취의 불법성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자 단체에 가입할 권리와 법원의 구제 방법, 차별에 대한 신고와 그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의 권리를 설명한다.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한다.

❍ 이후 117대 연방 의회(2021-2022)에서 「가사근로자 권리 장전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일반 근로자가 보장받는 노동권 보호를 가사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제정되지 않았다.

❍ **2023년 4월 바이든 대통령**은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보육자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95-Increasing Access to High-Quality Care and Supporting Caregivers)' 을 발표하였다.

- 동 명령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미국 연방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료보험이며, 실질적인 운영은 주정부가 담당한다.)**예산**을 **활용**하여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할 것을 **명시**한다.
- 동 명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면 표준계약서**와 **고용계약**에 대한 자료를 **여러 언어**로 **작성**하여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 **표준계약서**에는 직무의 책임과 우선순위, CCTV 설치 등 근무 감시에 관한 사항, 급여 및 인센티브, 보건 및 안전, 갈등 해결, 근무시간의 취소 또는 변경, 해고통지 관련 사항, 휴가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뉴욕

❍ **2010년 11월 28일 뉴욕**은 **최초로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노동법전에 편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주일**에 **24시간**의 **무급 휴가**를 **가사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1년간 근무**하였다면, **3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노동법 제161조)
-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가사근로자**는 **기본 급여**의 **1.5배**로 계산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입주 가사근로자**는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된다.(노동법 제170조)

❍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에서 **가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에 성희롱, 인종 또는 출신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추가하여, **가사사용인**을 **고용차별 금지**의 **영역**에 **전면적**으로 **포함**시켰다.

- 따라서 **고용주**는 성별, 인종, 종교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가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고**, **가사근로자**는 고용주의 차별 및 괴롭힘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고용주**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주정부에서 민사처벌하는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노동법 제690조-제694조)

□ 캘리포니아

❍ 2011년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가사근로자 권리장전」을 발의하였고, 2013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노동법전과 민법전에 다음과 같이 편제되었다.

- **입주 가사근로자**는 **매일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5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노동법 제510-제512.1조)
- 가사근로자는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장애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노동법 제3351조)
- **고용주**는 직원의 유급 휴가와 초과근무 수당 및 급여, 정기 급여일, 근로자 재해보상 보험회사의 이름 및 보험번호와 같은 **근로 기본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서면 근로계약에는 인종 및 임금과 관련하여 고용상의 차별금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민법 제1812.504조)

❍ '미국 가사노동자 연합(United Domestic Workers of America)' 등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뿐 아니라, 가사근로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권을 추진하였다.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전에 규정되었다.

- **이미 1974년**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개인 가정**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며, 캘리포니아 **노동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 **근로기준 시행국**(Division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병가, 근무계약 서류 작성 및 보관, 임금 판결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한 자료는 '캘리포니아 가사노동자 연합'과 협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익숙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다.(노동법 제1455조)

❍ 미국 연방과 뉴욕 및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사근로자 관련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가사근로자 관련 규정 현황

		연방법률	뉴욕	캘리포니아	한국[23]
적용 법률		공정근로기준법, 이민 및 국적법	노동법	노동법, 민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전체 가사근로자 (외국인 포함)	전체 가사근로자 (외국인 포함)	전체 가사근로자 (외국인 포함)	간접고용 내국인 및 특례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H-2)
최저 임금		적용 (한시적 돌봄, 간병서비스 제외)	적용	적용	적용 (개인 직접고용 제외)
유급 휴가		적용 (개인 직접고용 제외)	1년 근무 후 3일의 유급휴가	휴가 일수와 유급 병가를 고용계약서에 명시	적용 (1주일에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제외)
초과근무수당	일반	적용	기준 근무시간(40시간) 이후 기본 급여의 1.5배		미적용
	입주	미적용	기준 근무시간(44시간) 이후 기본 급여의 1.5배	기준 근무시간(45시간) 이후 기본 급여의 1.5배	
서면 계약		의무화 (행정명령, 표준 계약서 기준 제시)	의무화 (병가, 유급 휴가, 휴일,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 조건)	의무화 (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해야 함)	의무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 시사점

❍ **우리나라**는 **2024년 8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따라 **100명**의 **필리핀 가사근로자**가 일반 가정에서 **육아** 및 **가사업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 **최저임금제 역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6개월의 시범운영을 통해 향후 가사근로자의 범위를 일반고용허가제 대상 17개 국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다.

표3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26]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대상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현재 17개 국가 대상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동포
취업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가사근로	제외	포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의는 미국에서 발전해 온 가사근로자와 관련된 입법과 흐름을 같이한다. **최근 미국은 '간접고용'** 가사근로자에게 **보장**하던 **노동법적 권리**를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연방과 주정부에서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신분이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별금지 의무**를 규정한다.

❍ **외국인의 가사근로자 고용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첫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신흥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분석 ○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 지역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단정책 과제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외교통일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일본 ○ 멕시코 대선의 주요 이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여론조사를 통해 가늠하는 향후 미 외교안보 정책의 향방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의 ODA 전략 ○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기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2024년) 남아공 총선의 주요 쟁점과 전망 ○ 북한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 평가] ○ (제9차) 한일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 ○ 김정은의 헌법 개정 : 영토조항과 대남도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생성AI 시대, 새로운 혁신의 시작과 대응 ○ AI 안전성과 신뢰성,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정점은? ○ 국내 제로트러스트 보안로드맵 마련을 위한 실증방안 연구
	외교통일, 행정안전	○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 2024~2026 ○ 미·중 전략경쟁 시대 경기도의 국제협력 기본전략 연구
	기획재정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상황과 금융산업 평가 및 시사점 ○ 주요국 산업입지 지원제도 비교분석과 시사점 ○ 수출 경기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강화 : 하반기 수출의 리스크 요인과 전망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첫째주	보건복지	○보건복지 인재양성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 ○통합사례관리 종결사례에 대한 질적분석연구 ○미래 국가전략을 위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vol. 1, 저출생 원인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향
	교육	○AI 디지털교과서의 보편적 학습 설계(UDL) 및 접근성 지침 적용 사례 탐색 ○대학의 학과·전공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개편되었는가?
	국토교통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환경노동, 행정안전	○서울시 폐플라스틱 관리체계 개선방안
	행정안전	○서울형 생활임금제, 공공 주도로 빠르게 안착 합리적 산정식·민간 확산 유인책 개선 검토해야
	환경노동	○저출생 대응 고용환경 조성 방안
	문화체육관광	○(2023)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6월 둘째주	외교통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논의 결과와 향후 협력방안 ○신통일방안의 방향과 고려사항 ○유럽에서 '러시아 위협'의 현황과 전망 : 한-나토 협력에 시사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행정안전	○지속가능 서울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활성화 방안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개발과 무역 논의동향과 개발협력에의 시사점
	기획재정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더 나은 사회를 여는 디지털 혁신 ○OECD 「변혁적 과학기술 혁신 정책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둘째주	행정안전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
	기획재정, 교육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STEM 교육과 ODA 정책 시사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미국) 대체불가능한 토큰과 지식재산
	보건복지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평가 방안 마련 연구 ○COVID-19 사회적 대응 결과 분석 및 향후 감염병 유행 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응 방안 연구
	정무	○퇴직연금 펀드의 성과 민감도 증가와 시사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환경노동, 행정안전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제주 1차·3차산업의 일자리 변화와 시사점
	국방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적 군사 인재 육성. 미·일 동맹 지휘구조 변화 : 한국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군비확대가 가지는 함의 및 시사점
	환경노동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효과
6월 셋째주	국방	○미국의 임계 이하 핵실험의 의미와 시사점 ○북한의 핵전략 분석 및 대응과제 : 파키스탄, 러시아 사례와 비교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관련 생화학 공격 위험성 진단
	외교통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바이든 행정부의 우주 외교와 시사점
	외교통일	○기시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추이와 시사점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영향력 공작 전망 및 고려사항 ○중앙아 3개국 경제 현황과 한국의 협력 방향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러시아 : 전통적인 '잊힌 뒷마당'일까, 또는 '새로운 도전'일까?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전략적 의미 및 고려사항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셋째주	외교통일	○ 신통일담론의 과제 : 인권과 민족 ○ 일본 4. 28 보궐선거의 함의와 시사점 ○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 미국 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대 여론과 미 대선 ○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 (2024) 가자 사태 : 이스라엘의 딜레마와 국제정치적 함의
	행정안전	○ 지·산·학 기반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 협력증진 방안
	보건복지	○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지원방안 연구 ○ 발달장애인 지원인력 양성 및 교육 전달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공급망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소나기인가 장마인가? ○ 정부의 기업 R&D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외교통일, 국방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오커스 확대가 가지는 지정학적 함의
	기획재정	○ (제3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수검 결과와 시사점
	환경노동	○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능력의 중요성 증가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 변동할당분석을 이용한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정무	○ 미국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의 영향과 시사점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美, '안전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우주바이오 = Space biology ○ OECD AI 시스템 정의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교통,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넷째주	기획재정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환경노동	○청년 노동시장과 공공 고용서비스 성과 ○지역 일자리 지표 개선 및 활용 방안 연구 ○직장이동(Job-to-Job)과 산업별 일자리 전환 ○이끼를 활용한 도시 탄소중립 기여 방안
	여성가족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논의동향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SW로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기후 기술·기업 사례 연구
	국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의도 분석 및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
	국토교통	○노화하는 대한민국, SOC 투자의 정책 방향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뇌졸중 환자의 시지각 학습 훈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AI 시스템 수출가능성 검토와 지원방안
	외교통일	○북한 대남기구의 '모자 바꿔쓰기'식 개편 ○북한의 통일노선 전환 이후 대한민국 신통일담론의 모색 ○모디 3기 인도 정부의 대외정책 전망과 시사점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및 시사점 ○푸틴 방북의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과 전망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본 3국의 동상이몽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경제 분야: 삼자 협력 속 양자 협력?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공공분야 초거대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주권 클라우드 적용방향 ○우주·사이버 넥서스 시대 우주항공청 개청과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6월 넷째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행정안전	○AI 선도 국가를 위한 경기도 역할과 정책과제
	정무	○주식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의 장기 관계
	보건복지	○최중증발달장애인 돌봄보호자의 정신건강
	외교통일, 환경노동	○환경안보와 한일중 협력 : 한일중 정상회의의 함의와 향후 과제
	외교통일, 국방	○미국 공화당의 미래와 한반도 안보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의견24-0117, 2024. 6. 5.〕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익산시 대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조례안」(이하 "익산시조례안"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를 지원하여 **익산시 대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타 시·군 대학생**의 익산시 **전입**을 **유인**하기 위한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응시료의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 1인에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를 1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조례 규정 간 체계 및 문언의 의미,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22. 9. 22. 의견제시 22-0239; 법제처 2022. 2. 24. 의견제시 22-0028; 법제처 2021. 5. 18. 의견제시 21-0151 참조),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16쪽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익산시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는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익산시장**에게

자격증 취득 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익산시장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익산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 장치를 두는 규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응시료의 지원 금액**에 대하여 대학생 한 명당 연간 1회, 회당 최대 10만원의 지급 **상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익산시장은 **그 범위**에서 **재량**에 **따라 응시료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항목**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익산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2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견24-0032, 2024. 4. 18.)

□ 질의요지

가.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가 **정치활동**에 **관여**하였는지를 **조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부천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제1호)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부천시조례안"이라 한다)에서는 제15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조사·검토 사항으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여부"**를 **추가**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의 **정치활동 관여 여부**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제1호) 등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부천시 조례안에서 지방보조금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보조금의 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대상이나 교부결정의 기준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시**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법 제8조제1항이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반드시 조사**하거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밖의 사항을 **조례**에 **추가**로 **정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단정해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기준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헌법**상의 **일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면**,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안에서 부천시 조례안 제15조제6호에 따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 대해 어떤 형태의 행위를 조사·검토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체화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있었던 **정치활동 관여 행위**를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나 부천시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9조**에서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법**을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입법**을 할 때에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부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제1조),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제3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례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각의 **보조사업별로 고유한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의 정치활동 이력에 따라** 부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이러한 차별적인 취급을 허용하는 취지의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그 내용이 **불공정**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의 이전의 정치활동 관여 해당 여부를 조사 ·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개인의 정당 가입 · 탈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지방보조금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감정보인 개인의 정당 가입 · 탈퇴나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이나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현행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천시 조례안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정치적 중립을 유지"**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제1항)와 재량이 없는 경우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제2항)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천시조례안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법규인 **조례**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부천시조례안 제16조제4항의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인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어떤 행위의 유무를 조건으로 부과할지 예상하기 어려워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천시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미**를 **구체화**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같은 **조례안**이 **적용**되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 전부**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나 부천시 조례안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살펴보면, **「행정기본법」 제13조**에서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부천시 소관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로서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적용**되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부천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각각의 보조사업별로 고유한 사업 목적이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조례와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그 내용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이나 **헌법상**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Ⅵ. 법령 해석 사례

Ⅵ. 법령 해석 사례

1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라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 「관광진흥법」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24-0457, 2024. 6. 19., 문화체육관광부】

□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서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이하 "안전·위생기준"이라 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자(이하 "기타유원시설업자"라 함)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이하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라 함)**를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이유**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을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유원시설업**의 **세부 종류**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4항**에서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함)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물놀이형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는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에서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시설 자체가 갖는 위험요소의 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면서, 같은 별표 제2호나목1)라)에서 미니슬라이드를 비롯한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기타유원시설업자**가 **설치**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1)라)에서는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놀이형’**의 **한 종류**로 **분류**하면서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물놀이’**는 일반적으로 **‘물가나 물속에서 하는 놀이’**를 의미하고, 이 사안 **유기시설** 등에 해당하는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는 같은 별표 제1호나목1)라)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바디슬라이드’, ‘수중모험놀이’, ‘워터에어바운스’ 등에 비해 **길이나 탑승높이, 면적 등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실제 물을 매개체로** 하는 **놀이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설치·운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재질·구조** 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자체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검사**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수질관리, 안전요원 배치** 등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의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하고자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안전·위생기준**은 그 입법 경위 및 취지, 근거 법률과 규율 대상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관광진흥법령**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안전·위생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닌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관광진흥법령**의 **규정 체계** 및 **제도**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2조에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업자**에게 **별도**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한 **취지**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경우 그 **운영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고 각종 질병**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비해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위생기준 마련** 및 **준수**를 통해 물놀이형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운영 과정에서의 **수중안전** 및 **위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범위**는 그 **이용자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 사안 유기시설등이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차별을 둘 만큼 그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이 사안 **유기시설등도** 같은 법 제32조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관광진흥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이 사안 **유기시설등의 경우**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7호로 관광진흥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32조**를 **신설**한 **당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서 해당 **시설**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안전성검사

대상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체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2016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여 **기존 안전성검사 대상**이었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비교적 **위험요소**가 적은 **일정 규모 미만**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미니슬라이드’, ‘미니수중모험놀이’, ‘미니워터에어바운스’로 명명(命名)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시설**로 **재분류**하게 된 것인 반면,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32조 등의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부터 현행 규정**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점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이 사안 **유기시설등도 계속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계 규정의 **입법연혁**에도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의 내용이 이 사안 유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에 적용될 경우의 입법적 효과 등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유원시설업장 및 유기시설·유기기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2조(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원시설업자”라 한다)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별표 11과 같다.

② ~ ⑨ (생 략)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략)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생 략)

나. 구 분

1)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유 형	내 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가) ~ 다) (생 략)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 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표적맞추기, 물쏘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에어하키, 망치치기, 펀치,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일정한 시설(기계·기구·공간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 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 슬라이드 전체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 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2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24-0249, 2024. 6. 5.,】

□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이하 "공작물 축조 신고"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이유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제3호)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제2항),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영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83조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른데**,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법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건축신고 의무**(제1항)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2항부터 제6항까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일부 절차의 준용을 제외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와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준용의 범위 또는 인·허가 의제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삭 제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 11.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 ⑥ (생 략)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